

옥포면, 현풍면 읍 설치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517
----------	------

제출일자 : 2018. 1.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옥포면과 현풍면은 '17년 4월 25일과 7월 3일 각각 인구 2만 명을 초과하여 읍 승격의 법적 요건의 갖춤.
- 나. 지역발전의 촉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 행정을 희망하는 지역여론이 급증함에 따라 읍승격 추진에 대한 옥포면, 현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3항
-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
-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제3항
-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
 -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

3. 옥포면, 현풍면 지역현황

가. 일반현황

구분	면적 (km ²)	행정구역			행정기구 정·현원		
		법정리	행정리	반	기구	정원	현원
달성군	426.68	95	299	2,562	4국 2실 23과 2직속기관	856	837.5
옥포면	48.96	9	24	282	1개면 5담당	21	21
현풍면	24.57	11	36	225	1개면 5담당	21	21

나. 도시여건 현황

(2017. 12. 31. 기준)

구분	인구	면적	가구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인구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옥포면	22,249명	48.96km ²	9,411가구	17,419명	78%	7,757가구	82%
현풍면	20,285명	24.57km ²	9,738가구	18,878명	93%	8,509가구	87%

다. 인구추이

(2017. 12. 31.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 가 율	
						5년 평균	전년도 비교
옥포면	10,448명	10,260명	13,936명	17,361명	22,249명	21%	28%
현풍면	10,559명	11,337명	13,670명	17,113명	20,285명	17.7%	18.5%

라. 향후 인구증가 요인(단독·공동주택단지 입주)

옥포면				현풍면			
아파트명	세대수	인구수	입주년월	아파트명	세대수	인구수	입주년월
총 계	1,655	4,800		총계	1,038	3,010	
대성베르힐 6단지	417	1,209	'18. 8. 예정				
S-1BL 공공분양	442	1,282	'19. 7. 예정				
서한이다음 5단지	705	2,044	'20. 2. 예정	서한이다음 뉴스테이	1,038	3,010	'19 말 예정
단독주택단지	91	263	-				

※ 인구수 = 인근 입주아파트 평균 세대별 인구수(2.9명/세대) × 세대수

마. 공공시설

구분	출장소 수	파출소	농협	우체국	지도소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교	역	예비군 중 대	의료 시설	기타
옥포면	-	1	4	1	-	4	1	-	1	2	9
현풍면	-	1	3	1	1	2	5	-	1	12	12

바. 재정규모

○ 옥포면

- 세출예산 : 2,938백만원(인건비 : 1,575백만원)
- 지방세 : 29,369백만원
- 세외수입 : 386백만원

○ 현풍면

- 세출예산 : 2,747백만원(인건비 : 1,538백만원)
- 지방세 : 61,530백만원
- 세외수입 : 263백만원

4. 읍 설치 사유 및 주민의견

○ 옥포면

- 강림리, 교항리 일원 7천여세대 규모의 옥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이후 2015년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어 현재 6개의 아파트가 입주완료 되었거나 입주중이며 2020년까지 3개의 아파트 입주가추가 예정 되어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 됨.
-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달성 1,2차 산업단지 등 인근 지역 산업단지의 배후도시이며 40개 업체 500여명 규모의 옥포 농공단지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기업체 종사자의 신거주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음.
- 2020년까지 대구경찰특공대, 달성교육지원청 및 각종교육지원 센터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이전과 건립 등으로 지역발전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며,
- 화원옥포IC, 국도5호선, 테크노폴리스도로 등 교통의 중심지로 대구시내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음.

○ 현풍면

- 테크노폴리스 조성 이후 현재 7개의 아파트가 입주완료 되었거나 입주중이며 2019년에 1개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사업 시작이후 마지막 4단계 사업 중인 대구테크노폴리스는 현재 8개의 연구·공공기관과 다수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지역경제발전과 도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구지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 등 인근의 지역발전 잠재력 영향으로 현풍면의 지역발전이 촉진되고 있음.
- 현풍IC, 국도5호선, 20호선 등 교통이 잘 발달되어 인근지역과 접근성이 높으며 2018년 5월 현풍 하이패스IC 개통이 예정되어있음.

○ 주민의견

- 각종 회의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옥포면 및 현풍면민들의 읍 승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면민들이 읍 승격에 대한 기대와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읍 승격 시 교육·문화·행정 등 수요증가로 인한 각종 주민편익 시설의 추가 유치를 희망함.
- 또한 읍 승격시 이에 걸맞은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혜를 통해 주민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읍 승격을 대부분의 면민들이 열망하고 있음.

5.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18. 1. 2. : 현풍면 주민의견 수렴(2,882명) 및 실태조사서 제출
'18. 1. 16. : 옥포면 주민의견 수렴(1,162명) 및 실태조사서 제출
- '18. 1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안 작성
- '18. 2. 2 ~ 2. 8. : 제261회 임시회 상정, 읍 승격관련 의회의견 수렴
- '18. 2월 말 : 대구광역시에 읍 승격 승인요청
- '18. 3월 : 대구광역시 타당성 검토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
- '18. 4월 ~ 12월 : 행정안전부 검토 및 승인, 조례 개정·공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설치)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이하 “유가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이하 “유가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이하 “옥포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이하 “옥포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이하 “현풍면”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이하 “현풍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옥포면, 옥포면장 및 현풍면, 현풍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을 옥포읍, 옥포읍장 및 현풍읍, 현풍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옥포면과 현풍면란을 유가읍 다음에 차례로 삽입하고, 옥포면을 각각 “옥포읍”으로 현풍면을 각각 “현풍읍”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옥포면”을 옥포읍“으로 하며, 별표1 중 옥포면보건지소란을 유가읍보건지소란 다음에 삽입하고 “옥포면“을 각각 “옥포읍”으로 하고 달성군보건소 소재지란의 현풍면을 “현풍읍”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 제3조제1항, 별표1 및 별표3 중 “현풍면”을 각각 “현풍읍”으로하고 제3조3항 및 별표2 중 “옥포면”을 각각 “옥포읍”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옥포면”을 “옥포읍”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옥포면”을 “옥포읍”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현풍면”을 각각 “현풍읍”으로 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